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9일, 이해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9.15.) 상정·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 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
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
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
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

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심사결과

수정가결

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는 등 검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압수물건과 보관증은 보관 형태만 다를 뿐 범칙사건 고발에 따른 인계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압수물건 인계 대상 뿐 아니라 보관증의 인계 대상도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24 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 목록을 첨부하여 <u>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u> 에게 인계하여 야 한다.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 ----- ----- ----- ----- <u>--사법경찰관--</u> ----- -----.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개정안 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 에 따라 소유자등 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u>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u> 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 물건을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에게 인 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 ----- ----- <u>사법 경찰관</u> ----- ----- ----- <u>사법경찰관</u>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u>교정시설</u> 또는 <u>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u> 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u>교정시설의 장</u> 또는 <u>국가경찰관서의 장</u> 에게 송달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u> ----- ----- <u>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u> -----.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방검찰청 검사장</u> 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 ---- <u>지방공소청장</u> ----- ----- ----- ----- ----- -----.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 ----- -----

하여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에 게 인계하여야 한다.	-----<u>사법경찰관</u>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 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 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u>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u>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 건을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에 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 ----- -----<u>사법경찰관</u>----- ----- -----<u>사법경찰관</u>----- ----- -----.